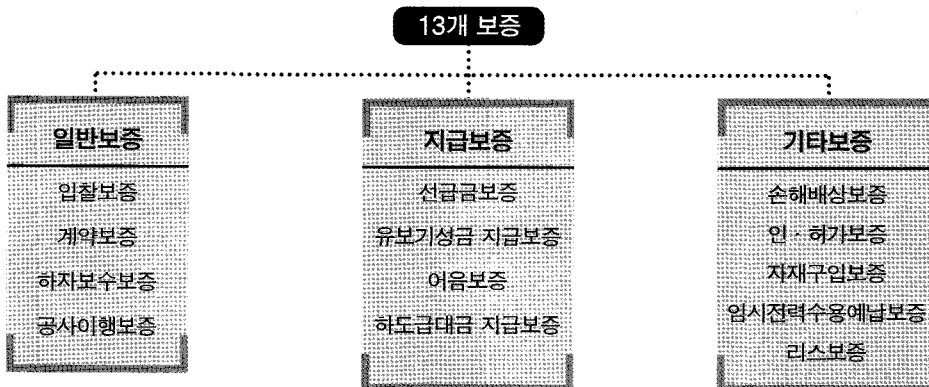


우리조합은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각종 보증업무를 매우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합과 거래하는 조합원사의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는등 아직도 조합업무 이용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보증서신청 및 발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호에는 보증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보증의 종류와 내용

### 가. 보증의 종류



## 나. 보증내용

### (1) 입찰보증

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2) 계약보증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3) 하자보수보증

조합원이 준공한 공사 등의 시공중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

### (4) 공사이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현재미시행)

### (5) 선금금보증

조합원이 도급 받은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선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것

### (6)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기성금을 받는 때에 유보하게 되어 있는 일부 기성금을 모두 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7) 어음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어음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8)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9) 손해배상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10) 인·허가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11) 자재구입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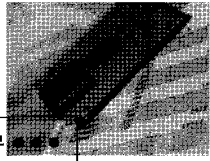
조합원이 시공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생산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자재구입대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12)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것

### (13) 리스보증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 등으로부터 시설·기계 및 기구 등을 대여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 2. 보증대상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보증대상으로 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산업
-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라.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 3. 거래방법

### 가. 입보거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조합과 업무거래 하는 것을 말하며, “비조합원 입보거래”는 조합원이 아닌 법인 또는 자연인을 입보하여 업무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신용거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연대보증인 없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 및 자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과 업무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입보면제거래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및 비조합원 연대보증인 없이 자기출자지분액 범위 내에서 조합과 업무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 2004년 7월 1일부터 신용거래를 전면 시행하려 하였으나, 입보거래에서 신용거래로의 전환에 따른 조합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합원이 신용거래, 입보거래 등 거래방법을 선택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 4. 약정

### 가. 약정의 의의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용자를 신청함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을 말한다.

### 나. 약정의 종류

#### (1)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조합원이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금액을 한도로 조합으로부터 계속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 선급금보증, 어음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리스보증, 비조합원의 연대보증에 의하여 발급하는 보증, 담보보증은 반드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급금보증은 신용거래일 경우 한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에 의할 수 있습니다.

#### (2)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

한도거래용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약정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매 거래시마다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체결하는 약정이다.

**다.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1) 입보거래

구분	법 인	개 인
약정인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개인인감증명서

연대보증인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	----------	----------

(2) 신용거래

구분	법 인	개 인
약정인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개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의 배 우자 등 개인 연대보증인 입보시	1. 개인인감증명서 2. 호적등본(가족관계 확인용) ※ 조합 전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출 생략 3. 재산세 납부증명원(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연간 종합토지세 및 건축물 재산 세 합산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함)
-----------------------------------	--

(3) 비조합원 입보거래

○ 자연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종합토지세 또는 건  
축물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및 건축물 납세

영수증 사본(납부세액 25만원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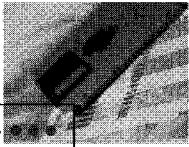
- 상기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등기부 등본(보증신  
청일 현재 15일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보증신청일 현재 15일 이내 발급분)
- 토지대장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보증신청일 현재 3월 이내 발급분)
- 법인 인감증명서(보증신청일 현재 3월 이내 발급분)
- 법인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보증신청일 현재  
15일 이내 발급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사인의 전년도 감사보고서(최근2년간 재무제  
표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인감으로 원본 대조)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4) 약정체결시 구비서류 중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 약정체결후 다음의 사유 발생시 약정을 갱신하  
여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인의 출자금액 증·감
  - 보증한도액의 감소
  - 연대보증인 입보자격의 상실
- 약정체결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채무추인서(조합소  
정서식)
  - 법인인감증명서(신대표자)



- 개인인감증명서(신대표자)
- 등기부등본
- 보증거래약정과 용자거래약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중복 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조합과의 보증업무거래에 사용할 인감(1개 이내의 사용인감)은 신고하여야 하며, 약정서에는 반드시 원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연대보증조건**

**(1) 입찰보증(소액보증) 및 입보면제거래에 의한 보증채무약정**

-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 입보하여야 합니다.(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
- ※ 소액보증 : 보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일반보증(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으로서 입찰보증한도 7배 중 4배까지를 일반보증의 기본한도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

- 조합원연대보증인 1인 이상과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 입보하여야 합니다.(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
- 조합원연대보증인의 담보좌수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80/100이상 이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면 약정이 가능합니다.
- ※ 예시 : 100좌 조합원의 연대보증인은 80좌이상 조합원 1인 또는 40좌 조합원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지급보증 및 기타보증채무약정**

- 조합원연대보증인 2인이상과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 입보하여야 합니다.(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
-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의 조합원 연대보증인 수는 따로 정합니다.
- 조합원연대보증인의 담보좌수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40/100 이상으로 하되, 연대보증인 담보좌수의 합계는 약정인 약정좌수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예시 : 100좌 조합원이 약정하는 경우는 40좌 조합원 1인과 110좌 조합원 1인 입보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4) 신용거래에 의한 보증채무약정**

-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 입보하여야 합니다.(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
- 약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입보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 · 자매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중 1인 이상, 약정인의 최다주식보유자가 개인자격으로 입보한 경우에는 최다주식보유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형제 · 자매 또는 약정인의 대표자중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입보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연대보증인"의 자격 : 만20세 이상인 자에 한하며, 만60세 이상인 자는 연간종합토지세 및 건축물 재산세를 합산한 납세금액이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거래를 하는 조합원은 다른 거래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

거나 신용거래응자를 받은 조합원이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응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의 조정 또는 신용평가등급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보증잔액이 보증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5) 비조합원 연대보증인에 의한 보증채무약정

- 연대보증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 비조합원(자연인 또는 법인) 1인 이상

- 선급금보증 : 비조합원(자연인 또는 법인)2인 이상(조합원 1인을 포함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대표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항상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1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보증채권자와 약정연대보증인이 동일인일 경우 다른 조합원이 연대보증한 개별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타 조합원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는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5. 보증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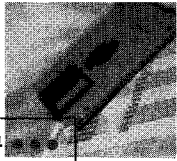
### 가. 입보거래 및 신용거래 기본한도

구 분	입 보 거 래	신 용 거 래									
		가산배수 적용시	신 용 평 가 등 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합 계	26배	26배	20배	18.5배	17배	15.5배	14.5배	13.5배	12.5배	11.5배	10배
입찰보증 (소액보증)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7배 (4배)
일반보증 (입찰보증제외)	13배	13배	9배	8배	7배	6배	5.5배	5배	4배	3배	2배
(공사이행보증)	(3배)	-	-	-	-	-	-	-	-	-	-
지급및기타보증 (순해배상·리스보증)	6배 (각2배)	6배 (각1배)	4배 (각1배)	3.5배 (각1배)	3배 (각1배)	2.5배 (각1배)	2배 (각1배)	1.5배 (각1배)	1.5배 (각0.5배)	1.5배 (각0.5배)	1배 (각0.5배)
(어음·자재구입보증)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1배)	(각0.5배)	(각0.5배)	(각0.5배)

주 1) ( )는 입찰보증, 일반보증 또는 지급 및 기타보증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거래는 신용평가등급 및 가산배수에 의하며, 가산배수는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용자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최고배수를 말합니다.

3) 소액보증은 보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일반보증(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으로서 입찰보증한도 7배중 4배까지 일반보증의 기본한도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입보거래 및 신용거래 보증한도 계산방법

보증한도 계산방법 : 담보좌수 × 보증배수 × 지분가(897,350원)

※ 지분가 적용일 : 2004년 4월 1일부터

- 입보거래(50좌 조합원의 경우)
  - 입찰보증 : 314,072,500원(50좌 × 897,350원 × 7배)  
(소액보증):(179,470,000)원(50좌 × 897,350원 × 4배)
  - 계약 및 하자보증 : 583,277,500원(50좌 × 897,350원 × 13배)
  - 지급 및 기타보증 : 269,205,000원(50좌 × 897,350원 × 6배)
- 신용거래(50좌 조합원 BB등급의 경우)
  - 입찰보증 : 314,072,500원(50좌 × 897,350원 × 7배)  
(소액보증):(179,470,000)원(50좌 × 897,350원 × 4배)
  - 계약 및 하자보증 : 246,771,250원(50좌 × 897,350원 × 5.5배)
  - 지급 및 기타보증 : 89,735,000원(50좌 × 897,350원 × 2배)

### 다. 비조합원 입보거래

- (1)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 출자지분액의 4배 이내
- (2) 선금금보증 : 출자지분액의 2배 이내
- ◆ 조합원이 비조합원연대보증인인 자연인 또는 법

인을 세워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의 1건당 발급 가능한 보증금액은 당해 조합원 출자지분액의 1배 이내로 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0좌를 초과하는 조합원은 200좌까지 보증

- 예시)
  - 50좌 업체 : 44,867,500원(50좌 × 897,350원 × 1배)
  - 200좌 업체 : 179,470,000원(200좌 × 897,350원 × 1배)
  - 500좌 업체 : 179,470,000원(200좌 × 897,350원 × 1배)

- ◆ 보증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마다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 1억원 발급시 : 자연인 2인 이상
  - 선금금보증 1억원 발급시 : 자연인 3인 이상(선금금보증은 기본입보 인원이 2인이며, 이 경우 5,000만원까지 보증가능. 보증금액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보증인 추가)

### 라. 입보면제거래

- (1) 입찰보증 : 출자지분액의 3배
- (2) 입찰보증을 제외한 보증 : 출자지분액의 1배
- ※ 용지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좌수에 대하여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 마. 담보물의 거래한도

각 담보물의 종류 및 거래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장주식 : 대용가격의 90%이내. 다만, 대용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상장 주식은 평균가격의 60%이내
- ※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 증권매매의 위탁 보증금으로서 현금대신 유가증권이 사용되는데, 이때 대용유가증권의 가격을 대용가격이라 합니다. 대용가격은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주가를 기중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 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근거로 하여 증권거래소가 월 단위로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 (2) 정기예금증서 : 액면금액의 90%이내(정기적금증서는 불입고의 90%이내)
- (3) 부동산 :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의 70%이내
- (4) 국·공채 : 대용가격의 90%이내
- (5) 보증사채: 액면금액의 90%이내
- (6) 공사대 확정채권 : 양수확정채권의 80%이내

**바. 신용거래 보증배수가산제도**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기 이용중인 용자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고 26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입찰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은 13배를, 지급 및 기타보증은 6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용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 담보좌수에 좌당 신용운용자금 용자한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용자금을 상환할 때마다 보증배수 1배를 가산합니다. 용자금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용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산배수	좌당 신용운용자금액	용자금 상환율	상환금액(원)
1배	677,000	20%	133,400
2배		40%	266,800
3배		60%	400,200
4배		80%	533,600
5배		100%	667,000

**(2)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거래지분액의 3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때마다 1배를 가산합니다.

(담보제공율별 가산배수)

가산배수	1좌당 지분액	담보제공율	1좌당 담보제공액(원)
1배	897,350원 (2003년도 말 결산지분액)	30%	269,205
2배		60%	538,410
3배		90%	807,615
4배		120%	1,076,820
5배		150%	1,346,025
6배		180%	1,615,230
7배		210%	1,884,435
8배		240%	2,153,640
9배		270%	2,422,845
10배		300%	2,692,050

※ 담보물의 종류

- 부동산(대지, 건물)
- 상장주식, 정기에·적금증서, 보증사채, 국·공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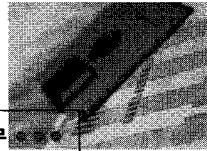
**(3) 가산배수 배분 방법**

- 가산배수 적용시 보증 및 등급별 안분은 아래 표 참조.

(단위 : 배수)

등급별 안분배수	보증 구분	배 수					
		1	2	3	4	5	6
AAA	일반	0.69	1.38	2.08	2.77	3.46	4.00
	지급	0.31	0.62	0.92	1.23	1.54	1.85
	기타						
AA	일반	0.70	1.39	2.09	2.78	3.48	4.17
	지급	0.30	0.61	0.91	1.22	1.52	1.83
	기타						





등급별 안분배수	보증 구분	배 수					
		1	2	3	4	5	6
A	일반	0.70	1.40	2.10	2.80	3.50	4.20
	지급						
	기타	0.30	0.60	0.90	1.20	1.50	1.80
BBB	일반	0.71	1.41	2.12	2.82	3.53	4.24
	지급						
	기타	0.29	0.59	0.88	1.18	1.47	1.76
BB	일반	0.73	1.47	2.20	2.93	3.67	4.40
	지급						
	기타	0.27	0.53	0.80	1.07	1.33	1.60
B	일반	0.77	1.54	2.31	3.08	3.85	4.62
	지급						
	기타	0.23	0.46	0.69	0.92	1.15	1.38
CCC	일반	0.73	1.45	2.18	2.91	3.64	4.36
	지급						
	기타	0.27	0.55	0.82	1.09	1.36	1.64
CC	일반	0.67	1.33	2.00	2.67	3.33	4.00
	지급						
	기타	0.33	0.67	1.00	1.33	1.67	2.00
C	일반	0.67	1.33	2.00	2.67	3.33	4.00
	지급						
	기타	0.33	0.67	1.00	1.33	1.67	2.00

(4) 현금예치시

- 신용거래시 현금을 담보로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금액의 3배까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보증의 제한

조합원이 업무거래중지 또는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도 보증을 하지 아니한다.

- 가. 정액입찰보증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될 때에
  - 발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 이내에 불낙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할 때까지
  - 보증서를 발급한 당해연도에 3회 이상 또는 10매 이상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신고일로부터 3개월까지
- 나. 건설업양도와 관련하여 조합이 의견서를 발급한 때
- 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또는 어음보증을 받은 후 어음발행인이 지불정지 또는 부도 처분되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등 신청을 한 때
- 라. 동일공사에 대하여 자재구입보증, 선급금보증, 어음보증, 또는 시공자금융자금증 각각의 보증 또는 용자가 중복될 때
- 마.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조회 결과 N1, N2, N3 및 금융부실거래처로 분류된 때.(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예정가격의 75/10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정하는 보증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계약보증. 다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동산등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증가능
  - 선급금보증. 다만, 부동산등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보증가능
- 사. 비조합원 연대보증인이 사망, 파산,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이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업무거래정지 사유 〉

- 출자증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 되었을 때
- 은행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건설산업기본법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당해 면허 또는 등록업종에 한하며 영업정지 전부터 시공한 공사의 하자보수보증서는 발급가능)

〈 업무거래중지 사유 〉

- 각종 보증금 청구를 받았을 때
-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조합이 지정한 배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용자금이 연체된 때
- 공사대 양도 승인기관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승인조건 행사
- 제세공과금의 체납
-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였을 때
- 제거래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 부실요인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보증수수료 요율

가. 입보거래

보증별	수수료요율	보증별	수수료요율
최저수수료	건당 3,000원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연 0.45%
입찰보증	건당0.03%	선급금보증	연 0.6%
계약보증	연 0.4%	리스보증	연 1.0%
하자보수보증	연 0.3%	유보기성금	3천만원 이하 연 0.24%
손해배상보증	건당0.8%	지급보증	3천만원 초과 연 0.19%
인·허가보증	연 0.8%	어음보증	연 0.8%
자재구입보증	연 0.4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연 0.45%

나. 신용거래

보증별	수수료요율	보증별	수수료요율
최저수수료	건당 3,000원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연 0.9%
입찰보증	건당0.03%	선급금보증	연 1.2%
계약보증	연 0.8%	리스보증	연 2.0%
하자보수보증	연 0.6%	유보기성금	3천만원 이하 연 0.48%
손해배상보증	건당1.6%	지급보증	3천만원 초과 연 0.38%
인·허가보증	연 1.6%	어음보증	연 1.6%
자재구입보증	연 0.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연 0.9%

※ 가산요율의 적용: 신용거래의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의 최다주식보유자·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중 1인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된 수수료의 50%를 할증(입찰보증 제외)합니다.



※ 할인요율의 적용 : 신용거래를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기본요율" 및 "가산요율"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에 아래와 같이 신용등급별로 할인요율(입찰보증 제외)을 적용합니다.

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할인요율	30%	25%	20%	15%	10%	5%	0%	0%	0%

**다. 소액보증(신용 및 입보거래 공통)**

보증별		수수료요율
소액보증	최저수수료	건당 12,000원
	계약보증	연 1.2%
	하자보수보증	연 0.9%

※ 소액보증은 가산요율, 할인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각종 업무거래시 일반 및 제보증잔액(당해 발급분 포함)이 자기출자지분액 1배이내인 경우에는 건당 최저수수료(3,000원)를 징수합니다.

**8. 보증의 해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해제한다.

보증별	해제사유
입찰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때</li> <li>• 입찰일 경과후 당해보증서가 반환된 때</li> <li>• 조합이 당해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때</li> <li>•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등 계약체결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li> <li>• 당해 조합원에게 낙찰되지 아니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li> <li>• 당해 조합원이 불낙찰신고서를 제출한 때</li> <li>• 정액입찰보증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2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분실신고서를 제출한 때</li> </ul>

보증별	해제사유
계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확인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li> <li>•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li> </ul>
하자보수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li> <li>•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한 때</li> </ul>
선급금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급금정산확인서를 제출한 때</li> <li>•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li> </ul>
유보기성금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li> <li>•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li> </ul>
어음보증	• 금융기관의 해제통지서 또는 어음보증책임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확인서를 제출한 때</li> <li>• 보증기간 종료후 30일이 경과된 때</li> <li>• 보증채권자의 하도급대금(준공금)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때</li> <li>• 하도급대금 영수증(전부지급)을 제출한 때</li> <li>•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지</li> </ul>
손해배상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확인서를 제출한 때</li> <li>• 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li> <li>•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li> <li>•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li> </ul>
인·허가보증	• 인·허가에 따른 의무이행 완료증명서를 제출한 때
자재구입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책임소멸일이 종료(보증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90일)뒤후 15일이 경과한 때</li> <li>• 자재대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한 때</li> </ul>
임시전력수용에납보증	• 임시전력사용료 완납증명원이 있는 당해 임시 전력영수증을 제출한 때
리스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보증기간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한 때</li> <li>• 리스보증책임완료확인서 또는 규정손실금 잔액확인서를 제출한 때</li> </ul>

## 9. 보증별 주요내용

### 가. 입찰보

#### (1) 일반입찰보증

가) 보증금액 : 조합원이 보증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나) 보증기간 :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되, 보증채권자가 입찰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

다) 보증수수료=보증금액×요율

라)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2) 정액입찰보증

가) 내용 : 입찰보증서에 보증채권자, 입찰건명, 입찰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보증서를 조합이 발급하여 조합원이 입찰참가시 그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하는 보증이다.

나) 종류 : 100만원권, 200만원권, 250만원권, 300만원권, 500만원권, 1천만원권, 3천만원권 및 5천만원권(8종)

다) 보증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

라) 보증서의 사용기간 및 보증기간 : 조합원이 발급 받은 정액입찰보증서는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이다.

### 나. 계약보증

#### (1) 보증금액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여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금율

- 시공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 시공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 : 계약금액의 20/10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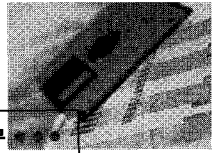
#### (2) 보증기간

계약일(변경계약에 의하여 보증금액이 증액되는 변경 또는 추가보증의 경우는 변경계약일을 말함)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기관이거나 입찰 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 (3) 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는 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보증채권자가 국가법령의 적용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보증기일까지) 산식 = 보증금액×계약일부터 계약이행기일 또는 보증기일까지의 일수/365×요율

※ 보증수수료 할인 : 보증대상 공사가 계약서상 시공연대보증



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수료에 20% 할인

※ 보증수수료 할증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와 계약금액이 해당 공종의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30% 할증

예시)

- 시공능력 : 2억원      • 시공연대보증인 : 없음
- 계약금액 : 200,000,000원
- 보증금액 : 40,000,000원(20%)
- 보증채권자 : ○○건설(주)
- 계약일 : 2004년 4월 1일
- 계약이행기일(준공일) : 2004년 6월 30일
- 보증기간 : 2004년 4월 1일~2004년 6월 30일(91일)

△ 입보거래인 경우 수수료 : 51,850원(십원미만 절사)

- $40,000,000원 \times 0.4\% \times 91일 / 365일 = 39,890원$
- $39,890원 \times 1.3 = 51,857원$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30% 할증)

△ 신용거래(개인연대보증인 있음. 신용등급 CCC)인 경우 수수료 : 103,710원(십원 미만 절사)

- $40,000,000원 \times 0.8\% \times 91일 / 365일 = 79,780원$
- $79,780원 \times 1.3 = 103,714원$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므로 30% 할증)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 또는 공공단체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이행확인원 : 계약일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 징구한다.

※ 보증신청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거나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서발급동의서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거나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을 초과할 경우 징구한다.

※ 신용거래, 입보면제거래,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보증

(1) 보증금액

당해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

(2) 보증기간

○ 도급공사 : 당해 계약목적물의 준공검사를 마친 날 또는 보증채권자가 당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계약문서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

○ 하도급공사 :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시일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날로 하여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계약이행 완료 전에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경우에는 준공일 또는 하자보수책임기간개시일은 조합원이 신청하는 날로 하여 사전에 발급받을 수 있다.

(3) 보증수수료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text{산식} = \text{보증금액} \times \text{하자보수 책임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 365 \times \text{요일}$$

※ 보증수수료 할증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 30% 할증

예시)

- 시공능력 : 2억원    • 보증채권자 : ○○건설(주)
- 계약금액 : 200,000,000원
- 보증금액 : 20,000,000원
- 보증기간 : 2003년 4월 1일~2005년 3월 31일(731일)

△ 입보거래인 경우 수수료 : 156,210원(십원미만 절사)

$$- 20,000,000\text{원} \times 0.3\% \times 731\text{일} / 365\text{일} = 120,164\text{원}$$

$$- 120,164\text{원} \times 1.3 = 156,213\text{원}(\text{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30\%할증})$$

△ 신용거래(개인연대보증인 있음, 신용등급 CCC)인 경우 수수료 : 312,420원(십원미만 절사)

$$- 20,000,000\text{원} \times 0.6\% \times 731\text{일} / 365\text{일} = 240,328\text{원}$$

$$- 240,328\text{원} \times 1.3 = 312,426\text{원}(\text{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30\%할증})$$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 또는 공공단체이거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

하인 경우 생략 가능)

○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서발급동의서

- 하자보수책임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이상 경과하여 보증신청시(이 경우 발주자 또는 보증채권자의 무하자 증명원으로 같음할 수 있음)

-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신용거래, 입보 면제거래, 보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을 초과할 경우(신용거래, 입보면제거래, 보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라. 선급금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발주자로부터 수령하는 선급금액을 보증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거나 당해 계약문서에 그 이자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자해당액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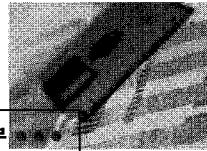
(2)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공사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계약 문서에 보증기한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 정부공사의 경우 선금지급요령에 의하여 계약이행기일에 60일을 가산한다.

(3) 보증수수료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 × 요율

예시)

- 보증채권자 : 00건설(주)
- 계약금액 : 200,000,000원
- 보증금액 : 60,000,000원(30%)
- 계약일 : 2003 4월 1일
- 계약이행기일 : 2003년 6월 30일
- 보증서발급일 : 2003년 4월 9일
- 보증기간 : 2003년 4월 9일~2003년 6월 30일(83일)

△ 입보거래인 경우 수수료 : 81,860원(십원미만  
절사)

- 60,000,000원 × 0.6% × 83일/365일 = 81,863원

△ 신용거래(개인연대보증인 있음, 신용등급 CCC)  
인 경우 수수료 : 163,720원(십원미만 절사)

- 60,000,000원 × 1.2% × 83일/365일 = 163,726원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인 경우 계약일반  
조건이나 특수조건 등에 관한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은행도입람출급 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부 약속  
어음
- 담보제공증서

마. 유보기성금지급보증

(1) 보증금액

발주자가 당해공사 기성금증 계약조건에 따라 유보  
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한다.(통상 기성금액의  
10%)

(2)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기일까  
지로 합니다.

(3)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로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 일수에 대하  
여 계산합니다.

산식 = 보증금액 × 보증서발급일부터 계약이행기일  
까지 일수/365 × 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계약서 사본
- 유보기성금지급보증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일반  
조건이나 특수 조건 등의 서류사본(당해 계약문  
서의 일부임을 대조)

바. 어음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의 기성금 또는 준  
공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받는데 대하여 그 약정에 따  
라 부담하는 금액(약정이자 포함)을 보증금액으로 합  
니다.

(2)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일로부터 할인어음의 만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서발급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text{산식} = \text{보증금액} \times \text{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 / 365 \times \text{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
-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사본
-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확인서 또는 어음발행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금융거래상황확인서(우량업체 및 적격업체)

**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로 합니다.

- 공사가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가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가간(월수)}} \times 4$$

- 공사가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선급금}}{\text{공사가간(월수)}} \times \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2) 보증기간

계약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당해 계약문서에 대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행기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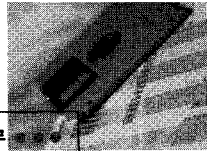
(3) 보증수수료

계약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다.  
산식 = 보증금액 × 계약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 / 365 × 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하도급대금지급조건등에 대한 서류의 사본
- 은행도일람출급 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담보제공증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아. 손해배상보증**

(1) 보증금액

당해 공사의 입찰유의서 등에 정하여진 계약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없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7/1000로 합니다.

(2) 보증기간

당해공사의 계약일부부터 계약이행기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당해 공사의 입찰유의서 등에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3) 보증수수료=보증금액×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도급계약서사본
- ※ 보증채권자가 국가계약법령의 적용기관이거나,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이행확인원(계약일을 경과하여 보증을 신청한 때)
- ※ 보증신청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인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자. 인·허가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원상회복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2) 보증기간

인·허가기간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기일까지(인·허가기간이 불분명한 때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로 합니다.

(3) 보증수수료

인·허가기간개시일(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 보증금액×인·허가기간개시일(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365×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인·허가의 내용 및 조건이 명시된 공문 등 사본
- 은행도일람출급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담보제공증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차. 자재구입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지급의 이행담보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하되, 보증대상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보증기간

자재공급 계약개시일부터 계약기간만료일에 90일

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

- 계약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신청한 기일
- 보증기간개시일이 보증서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발급일부터

**(3)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text{산식} = \text{보증금액} \times \text{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 / 365 \times \text{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당해 자재공급계약서 사본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은행도입람출급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담보제공증서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카.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

**(1) 보증금액**

조합원이 그 사업에 필요한 전력을 임시로 수용하고자 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예납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합니다.

**(2) 보증기간**

임시전력수용계약개시일(그 개시일이 불분명할 때에는 보증서발급일)부터 그 수용계약 종료일에 3월을 가산한 기간(수용계약기간이 불분명한 때에는 조합원

이 신청한 기일)으로 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 보증기간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합니다.

**(3) 보증수수료**

수용계약기간개시일 또는 보증서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text{산식} = \text{보증금액} \times \text{수용계약기간개시일 또는 보증서 발급일부터 보증기한까지 일수} / 365 \times \text{요율}$$

**(4)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심사에 필요한 서류

**타. 리스보증**

**(1) 보증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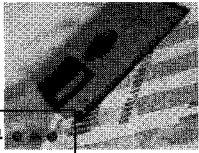
조합원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리스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이용함에 있어 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취득원가의 50/100 이내로 한다. 다만, 취득원가의 50%를 초과하는 보증금액에 대해서는 조합이 정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보증기간**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보증서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차수증)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3) 보증수수료**

보증서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일수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산식 = 보증금액 × 보증서 발급일 또는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일수 / 365 × 요율.

(4) 보증대상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하여 보증한다.

※ 리스물건을 대여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5) 구비서류

○ 보증신청서

○ 리스계약서 사본

○ 리스물건수령증서 사본

※ 미발급인 경우에는 추후 발급시 제출하면 된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 초본

※ 미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시 제출하고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징구하지 않는다.

○ 납세증명서(유예포함)

○ 은행도입람출급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부 약속어음

○ 담보제공증서

〈참고사항〉

**리스의 개념** : 리스라 함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합니다.

**규정손실금** : 리스이용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시설대여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시설대여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금으로 통상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지불에 의하여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감하게 됩니다. 대여시설의 상각부분, 이자 보험료, 세금, 수수료 등 대여물건의 소유에 따른 부담비용 (대여물건의 소유자는 시설대여 회사임)과 시설대여회사의 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규정손실금이란 배상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있어서의 당해시설의 잔존가액 또는 시설대여회사의 이익을 보장할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도거래용채무약정서**

인감대조

담 당	차 장	지점장

**건 본**

〈 용 도 〉

한도거래 : 보증(    ), 용자(    ), 보증·용자거래용( ○ )

개별거래 : 용자(    )

약정년월일 :    년    월    일

인 지
(이면첨부)

**대 한 설 비 건 설 공 제 조 합 귀 중**

- 약정인은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귀 조합으로부터 귀 조합법령과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각종 보증, 용자 및 어음할인을 받음에 있어 약정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귀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연대보증인은 약정인의 채무를 약정인과 연대하여 귀 조합에 이행할 것을 확약함.

이 약정서는 한도거래용(용자약정은 개별거래 겸용) 약정서임을 충분히 이해하며 한도범위내에서 약정기간까지 거래한 제반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약 정 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상 호 그네건설(주)	
		대표자 이 용 홍	대표자
연 대 보	약정인법 인대표자 개인자격	입찰(소액보증 포함), 계약 하자보수, 선급금, 유보기성금지급,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00 성 명 이 용 홍 주민등록번호 300101-1234567
	대표자 또는 최다주식 보유자의 배우자등 개인자격	손해배상, 인·허가, 자재구입, 임시전력수 용예납보증 및 용자 채무약정관계	주 소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000 성 명 성 춘 향 주민등록번호 300102-2345678 대표자와의관계: 배우자 ※ 신용거래에 한함
증 인	조 합 원 자 격	보증 거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
			상 호 남원성비(주)
		계약 및 하자보수 보증채무약정관계 (소액보증 제외)	대표자 변, 학 도
			주 소
			상 호
			대표자

연 대 보 원 자 중 인	조 합 원	보증 거래	선급금, 자재구입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손해배상보증, 인·허가 보증 및 임시전력수용 예납보증채무약정관계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자 격 인	용자 거래	시공자금, 운영자금, 어음할인의 어음거래 약정관계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 상 호 남원성비(주) 대표자 변 학 도	①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주 소 상 호 대표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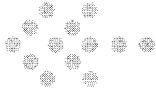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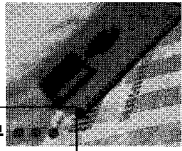
제1조(약정금액) 약정인이 귀 조합으로부터 보증, 용자 및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각 한도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	종 류	한 도 금 액
보증 거래 한도액	입찰보증	금 원정
	소액보증(입찰보증 배수중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는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금 원정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금 원정
연대보증인	선급금보증, 자재구입보증, 유보기성금지급보증, 손해배상보증, 인·허가보증 및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금 원정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보증한도(입찰보증제외)	금 원정
용자 거래 한도액	운영자금(담보 및 신용), 시공자금 및 어음할인을 포함한 기본용자 한도액	금 원정
	운영자금(담보 및 신용), 시공자금 및 어음할인을 포함한 특별용자 한도액	금 원정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용자한도액	금 원정

제2조(보증, 용자, 어음할인의 종류 및 신청) 귀 조합에서 보증, 용자 및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귀 조합의 보증, 용자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제1조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귀 조합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시로 신청하여 각종 보증, 용자 및 어음할인을 받기로 함.

이 하 제 3 조 - 제 2 0 조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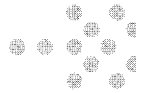
강사역			담당	차장	지점장			
조합원 No 1234								
<b>입찰 (일반·정액) 보증 신청서</b>								
귀 조합과 본 월 일 체결한 약정의 각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입찰원 해, 정액입찰] 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분	신청 내용							
계 단 인 체	*보증서 No	보증금액	₩10,000,000 ㉠					
		입찰건명	000청사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 ㉡					
		보증채권자	00사 경리관 ㉢	발주자	*하도급만기재			
		입찰기일	2004년 4월 2일 ㉣	보증기간	입찰서제출 마감일 (년월일)로부터 일			
	*보증서 No	보증금액	₩					
		입찰건명						
		보증채권자		발주자	*하도급만기재			
		입찰기일	년월일	보증기간	(입찰서제출 마감일 (년월일)로부터 일			
	*보증서 No	보증금액	₩					
		입찰건명						
		보증채권자		발주자	*하도급만기재			
		입찰기일	년월일	보증기간	(입찰서제출 마감일 (년월일)로부터 일			
전입업체	*보증서 No	권종	수량	합계	*한도가능여부	*수수료	*총합계	
	~	만원	건	만원	가·부	₩	건수	
	~	만원	건	만원	가·부	₩		
	~	만원	건	만원	가·부	₩	보증금액 ₩	
	~	만원	건	만원	가·부	₩	수수료 ₩	
2004년 4월 1일								
신청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상호 : 그네건설(주) ㉤								
대표자 : 이몽룡 ㉦ (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구분	*심사란			*해제란				
일반 입찰	보증서 No	한도가능여부	수수료	년월일	보증서 No	해제금액		
	가·부	₩				₩		
	가·부	₩				₩		
	가·부	₩				₩		
*전입업체 〈행차간〉	년월일	보증서 No	수량	합계	년월일	보증서 No	수량	합계
	~	~	건			~	건	
	~	~	건			~	건	
	~	~	건			~	건	
	~	~	건			~	건	
총합계							건	



## 입찰보증신청서 작성방법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부분의 보증금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분은 입찰공고 내용에 맞게 해당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부분에 조합원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신청서로 일반, 정액입찰보증서 개별 및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일반입찰은 건별로 기재하여 주시고 정액입찰보증은 권종에 1,000만원, 수량에 10건 등과 같이 종류별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정액입찰보증의 액면종류 : 100만원권, 200만원권, 250만원권, 300만원권, 500만원권, 1천만원권, 3천만원권, 5천만원권.
  - 정액입찰보증은 발급일부터 18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내 미 사용분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신청서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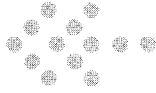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부분은 보증금액(=㉡X㉢%)을, ㉣부분은 보증금율을, ㉤부분은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부분은 공사명을, ㉩부분은 계약서상의 (갑)을 기재하시고 하도급일 경우에는 ㉪부분에 발주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부분에 해당날짜를, ㉭부분에는 준공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 ㉮부분은 보증채권자가 민간일 경우 ㉯에서부터 ㉺까지 기간을,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보증기간에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은 ㉯기간에 60일을 더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6. ㉻부분에 조합원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감사역		담당		차장		지정장		
조합원 No 1234								
<b>계약(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신청서</b>								
귀 조합과      년    월    일 체결한 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아래에 같이(원 : 계약, 공 사이행, 하자보수    하 : 계약, 공사이행,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구분		신청내용					해제일	
계약 보증서 *No	보증금액	계약	₩ 10,000,000    ㉠	시행 방법	100,000천원		년 월 일	
		공사이행	₩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10    ㉡	%		
		계약금액	₩ 100,000,000    ㉢	예정가격에 대한 비율		%		
		예정가격	₩	계약공사이행 보증만 기재				
		계약건명	000청사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    ㉣					
		보증채권자	00중·그네건설(주)    ㉤	발주자	000시청    ㉥ *하도급만기재			
		납입일	2004년 4월 7일    ㉦	계약일	2004년 4월 2일    ㉧			
공사이행 보증서 *No	계약이행기일 (중공일)	2004년 6월 30일    ㉨	보증기간	2004년 4월 2일부터    ㉩ 2004년 6월 30일까지				
	보증금액	₩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			%		
	계약금액	₩						
	계약건명							
	보증채권자		발주자			*하도급만기재		
	계약일	년    월    일	중공일	년    월    일				
하자보수 보증서 *No	하자보수 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2004년 4월 2일 상 호 : 그네건설(주)    ㉫ 대표자 : 이    용    흥    인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신청인	구분	해당좌수	실거래한도액	보증잔액	여유한도액			
	총 거래 한도							
	계약·공사이행보증 한도							
	비조합원 입보시거래한도							
구분	*심사란			*해제란				
	한도가능여부	보증일수	수수료	보증서No.	해제금액	추징·환불수 수료		
계약	가·부	₩		₩	₩			
공사이행	가·부	₩		₩	₩			
하자	가·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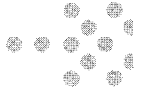




## 하자보수보증신청서 작성방법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부분은 보증금액(=㉡×㉢%)을, ㉣부분은 보증금율을, ㉤부분은 계약금액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부분은 공사명을, ㉦부분은 계약서상의 (갑)을 적으시고, 하도급일 경우에는 ㉦부분에 발주자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분은 계약일을, ㉨부분은 실제준공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 ㉩부분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 종료일까지의 날짜를 기재 주십시오.
6. ㉪부분은 민간공사의 경우 ㉫와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보증기간에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은 ㉬기간에 60일을 더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7. ㉭ 부분에 조합원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선급금보증신청서 작성방법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부분은 보증금액(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약정이자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 + ㉢를 기재)을, ㉣부분은 계약서 상 선급금액을, ㉤ 및 ㉥부분에는 선급금율 및 약정이율을 기재하시고, ㉦ 및 ㉧부분은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약정이자에 대하여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부분은 공사명을, ㉩부분은 계약서상의 (갑)을, 하도급일 경우 ㉩부분에 발주자를 기재하시고,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및 ㉫부분에는 계약서상 계약일 및 준공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 ㉬부분에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기간까지를,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이거나 계약서 등에 보증기간에 따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합니다.(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은 ㉭기간에 60일을 더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6. ㉮부분에 조합원사의 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시고, 원인감 또는 조합에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감사역		담당		차장	지점장					
보증서 No		호		조합원 No 1234						
<b>선급금보증신청서</b>										
귀 조합과 년 월 일 체결한 약정서의 각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 하) 선급금보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 30,000,000 (원)									
선급금액	₩ 30,000,000 (원) (도급금액의 30% (원))									
약정이자	₩ (원) (이율 연리 % (원))									
계약금액	₩ 100,000,000 (원)									
계약건명	000공사 신축공사중 기계설비공사 (원)									
보증채권자	00주식회사(주) (원)	발주자	000공사 (원) *하도급인가							
계약일	2004년 4월 2일 (원)	계약이행기일	2004년 6월 30일 (원)	보증기간	2004년 4월 6일부터 (원) 2004년 6월 30일까지 (원)					
2004년 4월 6일										
신청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상 호 : 그네건설(주) (원)										
대표자 : 이 용 홍 (인)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심사	관리사항	구분	조합원 No	상 호	담보좌수	보증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기타 관리사항	확인자 (수화자)			
		신청인								
		연대보증인								
	융자현황 한도심사	신청인	구분	용자금	해당좌수	실거래한도액	보증잔액	여유한도액	수수료 계산일수	수수료
			융자금	₩	좌	₩	₩	₩	일간	₩
			총지급기타	₩	좌	₩	₩	₩		
			비조합원	₩	좌	₩	₩	₩		
	*해제란	선급금 [ 정산 ] 일	준공금지불일			단축기간	20 ( 20 일간 )	환불수수료 ₩		
		20	20							
	<p>(주) 1. *표란은 당 조합에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아래비아숫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신청서상의 인감은 조합에 신고한 원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5. 구비서류 : ①은행도입출금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부약속어음 ②담보제공증서 ③도급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④납세증명서(유예포함)</p>									